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1. 신종갑 의원 외 6명
 - 나. 회부일자: 2025. 4. 11.
 - 다. 상정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 4. 24.)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고병준 의원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5. 4. 1. ~ 2025. 4. 7.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제정 배경

-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위기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명권 침해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 또는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
- 정신건강 위기 상황은 의료적 개입뿐 아니라 행정적·사회복지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다부문적 문제로서,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특히 응급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 적절한 입원처 지정, 병상 확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대응 없이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이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안 제1조~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위기대응 협의체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응급입원이나 행정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안 제8조)으로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정함.
- 안 제2조 정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과 관계 규정에 맞게 명시함.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인권보장 등의 정책 발굴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안 제5조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와 운영 사항으로 협의체 구성원은 총 11명으로서 보건소장, 소관과장, 구의회, 관내 경찰서, 소방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여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하도록 하였고,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공공병상을 확보하여 응급입원과 호송비용, 외래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급격한 사회변화로 구민들은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정신건강 수준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원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서울마포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보고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현황 및 분석결과 '23년 응급입원은 전년도 (33건) 대비 +151%(+50건)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내 응급입원 의뢰 지구대 순서는 홍익 38건(45.8%) > 월드컵 22건(26.5%) > 용강 18건(21.7%) > 기타 부서 5건(6.0%) 으로 나타남.

[표. 1] 2023년도 응급입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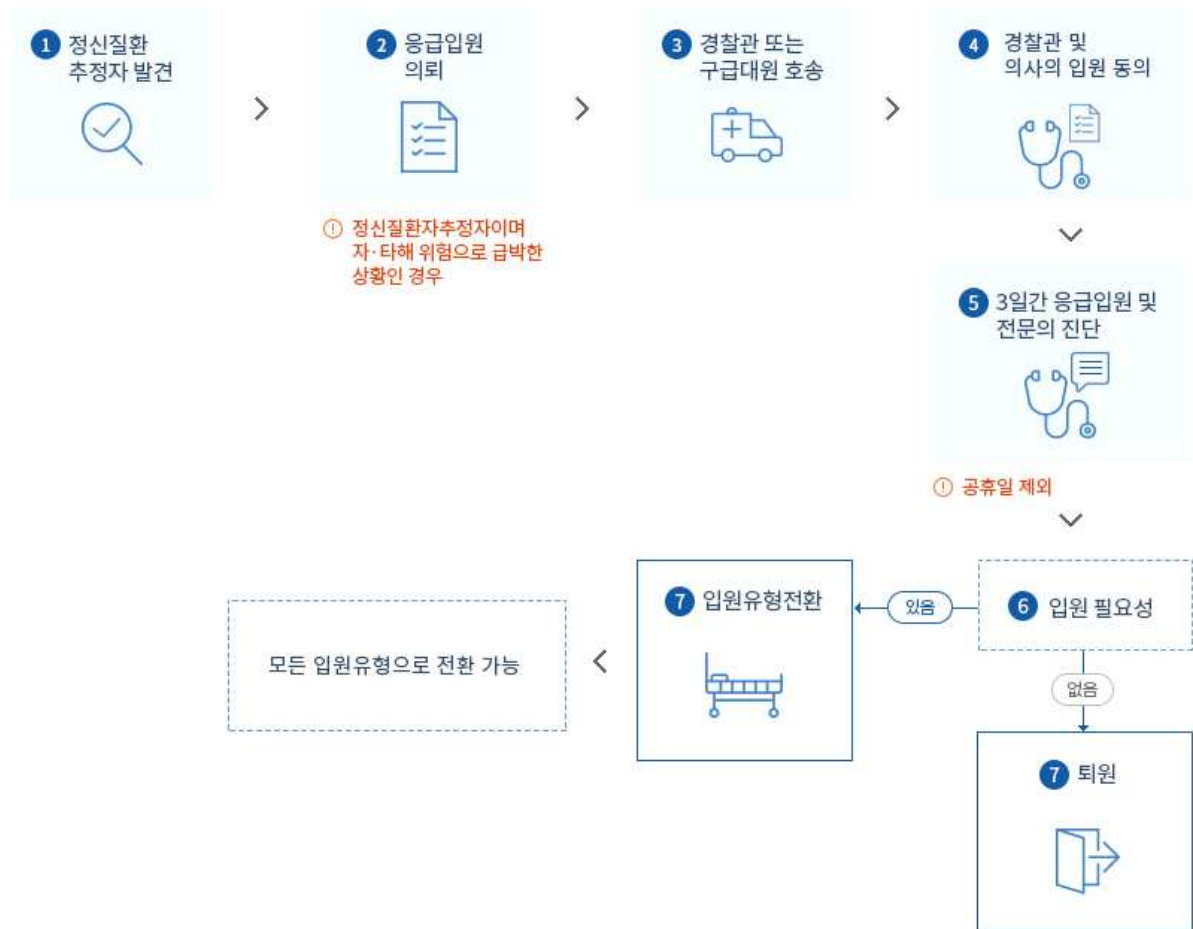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계	응급입원 의뢰부서			
		용강	홍익	월드컵	기타(형사 등)
2022년도	33	9	13	11	-
2023년도	83	18	38	22	5
2024년도	76	26	28	21	1

- 이같이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응급정신질환자 발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향한 다양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현재 응급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이 가능하지만, 마포구에는 서울시 지정 정신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장시간을 들여 원거리 정신의료기관으로 호송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마포경찰서에서 공공병상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따라서,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만일의 사고를 최소화하고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차원의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병상 마련을 위한 예산은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과의 MOU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투입 방안이 필요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광역단위 병상 공동 활용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절차>



[참고자료]

□ 지정의료기관 현황

○ 서울시 지정정신의료기관¹⁾ : 행정입원 가능병원

연번	소재지	기관명	유형	주소
1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2	영등포구	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환경 연구소부설 해상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3
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공립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4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립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5	강서구	강서필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24
6	송파구	송파미소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13
7	중랑구	마인드웰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03
8	도봉구	베이직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610
9	동대문구	서울명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1
10	동대문구	멘토스병원	정신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9
11	금천구	성지병원	병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122

○ 마포구 정신건강 관련 사업

(24년 기준)

연번	사업명	담당 부서	사업비 (천원)	지원조건	사업내용
1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보건 행정과	1,172,500	국비/시비/구비 (50/25/25)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자립생활 지원
2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5,000	국비/시비/구비 (50/25/25)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전문 상담 등
3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756,000	국비/시비/구비 (50/25/25)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치료, 재활로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 지정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을 수행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 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